

#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

## 검 토 보 고 서

### I . 회부경위

- 청원번호 : 제17호
- 청원자 : 서울시 도봉구 쌍문4동, 김종진 외 285명
- 소개의원 : 김창원(더불어민주당, 도봉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접수일자 : 2020년 3월 24일
- 회부일자 : 2020년 4월 6일

### II . 청원요지

- 도봉구에는 도봉구유소년야구단을 비롯한 약 8개의 유소년 야구 클럽이 있고, 야구선수를 꿈꾸며 매일 훈련하는 아이들과 건강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아이들이 200명 이상 있으나, 현재 도봉구에는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이 없어, 인근 지역(경기도)의 야구장을 대관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야구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도 타 지역의 관내 야구클럽에게 우선순위에 밀리며 비용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매우 많은 바, 도봉구에도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건립이 시급함.

###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구유소년야구단을 비롯한 8개의 유소년 야구클럽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관내에 유소년 선수를 위한 야구장이 없어 인근지역의 야구장을 대관해야 하고, 훈련과 경기를 진행하는 날에는 유소년 선수와 부모 300명 이상이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 반면 바로 인접한 노원구에는 불암산종합스타디움 및 육군사관학교 야구장 등이 있고 상계뉴타운 인근에도 추가 건립이 확정되어 총 3곳의 야구장을 확보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리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도봉구 관내에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을 조속히 건립해 달라는 동 청원은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청원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원법」

## V. 검토 의견

###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20년 3월 24일 김창원 의원의 소개로 김종진 외 285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17호로 제출되어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청원은 도봉구에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이 없어 훈련 및 경기를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야구장을 대관해야 하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아 도봉구에도 유소년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유소년야구

- 유소년야구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1939년 칼 스토크(Carl Stotz)에 의해 만들어진 만 12세 이하의 유소년들로 구성되는 리틀야구(Little Baseball)를 말하며, 1947년 리틀야구 월드 시리즈가 첫번째로 개최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8월, 전년도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우승팀이었던 대만의 리틀야구팀 타이완 금룡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에 맞설 서울선발팀이 만들어진 것이 최초였고, 같은 해 9월에 한국리틀리그가 만들어졌음.<sup>1)</sup>

---

1) 우리나라의 유소년야구단체는 대한야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리틀야구연맹 외에도 대한유소년야구연맹 등의 단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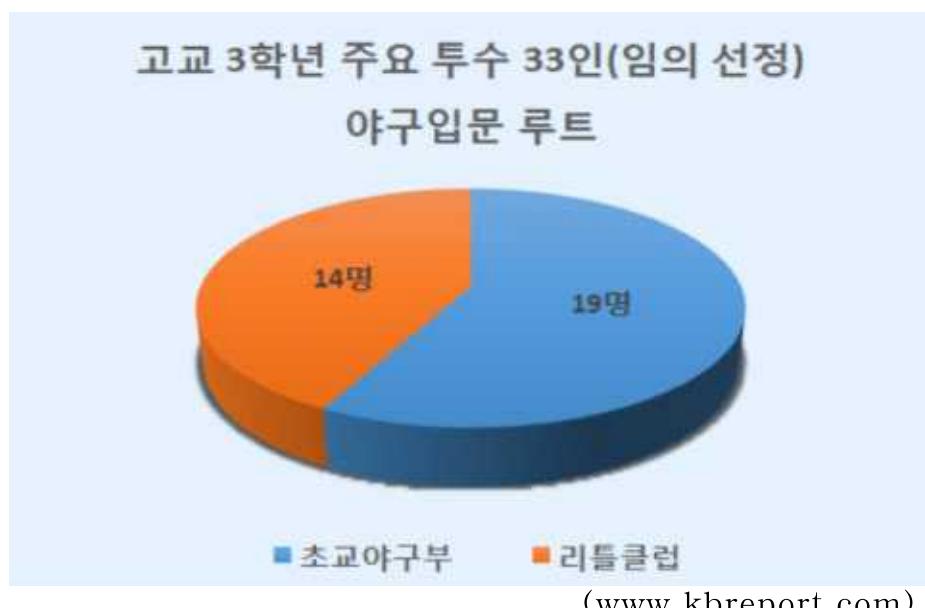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84년, 1985년, 2014년에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고교나 성인야구 선수들 중에 리틀야구단부터 시작하는 선수가 많을 정도로 야구 저변 확대에 기여했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음.

**연도별 리틀야구 저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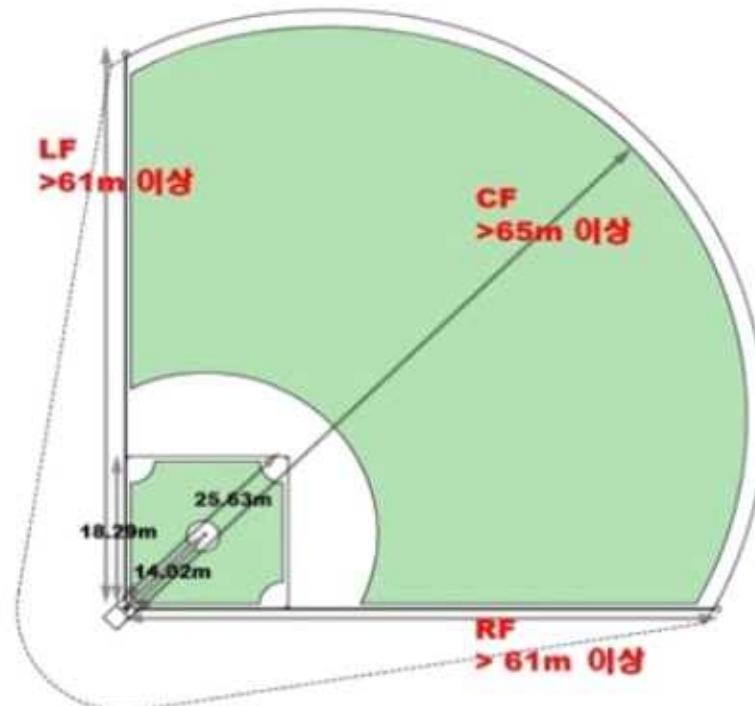
**고교 3학년 주요 투수 33인(임의 선정)**

**야구입문 루트**



- 유소년야구에는 흑사와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수 제한, 출전제한 규정 등이 있고, 야구장 규격도 성인야구장 규격에 비해 작음.

### 〈리틀야구장 규격〉



구분	홈 ~ 투수 플레이트	베이스간	홈 플레이트 ~2루	홈 ~ 센터라인	홈 ~ 좌우 파울 라인	홈 ~ 포수 그물 망
프로야구	18.44 m	27.432 m	38.795 m	121.918 m 이상	99.058 m 이상	18.288 m 이상
리틀야구	14.02 m	18.290 m	25.630 m	65 m 이상	61 m 이상	7.620 m 이상

### 나.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도봉구에는 도봉구유소년야구단 등 8개<sup>2)</sup>의 유소년야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노원구에는 6개<sup>3)</sup>의 유소년야구단이 활동

2) 도봉구유소년야구단, 도봉구새싹야구단, 도봉구꿈나무야구단, 도봉와이번스야구단, 도봉라이온즈야구단, 리틀야구단, 포니야구단, 제이스포츠유소년야구단  
 3) 노원구리틀야구단, 노원구B(상계)리틀야구단, 노원구유소년야구단, 노원구유소년야구단B, 노원유소년야구단, 노원포니유소년야구단

하고 있고, 불암산종합스타디움 등 3개의 야구장을 확보하고 있는 노원구에 비하면 도봉구는 야구장 부족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 어려움이 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별첨1. 서울지역 초·중등학교 야구단, 한국리틀야구연맹 및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소속 서울지역 야구단 현황)

- 서울시의 야구장 현황을 보면 중국 장충리틀야구장에 유소년용 1면, 노원구 불암산종합스타디움야구장, 마포구 한강공원 망원지구야구장(임시), 송파구 송파유소년야구장, 강동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야구장(임시), 서울대공원 야구장에 각각 1면씩 총 6면의 유소년야구장이 있을 뿐임.(별첨2. 서울시 야구장 현황)
- 따라서 유소년야구장 조속 건립을 희망하는 청원의 취지에 공감 할 수 있음.

#### 다. 야구장 건립 부지

- 청원인들은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유소년 야구장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 도봉동 화학부대는 1986년 창설 이후 30여 년간 주둔하며 도봉동 야산 일대를 화생방훈련장으로 사용해왔고, 주민들은 쇠루가스 등 각종 화학물질 냄새와 소음에 노출, 군부대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해당 지역은 낙후돼 왔으며, 화학부대 주둔지 및 훈련장은 도시계획상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제한이 있는 토지로 건축 행위가 어려운 실정이며, 국방부는 토지에 대한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데(아시아경제 2017.1.16.).

- 도봉구와 주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지난 30년간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온 만큼 남아있는 부지에는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함(뉴시스 2017.2.10.).

####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개요〉

- 위치 : 도동구 도봉동 산 96-4 등 30필지
  - 면적 : 71,302m<sup>2</sup> (주둔지 35,443m<sup>2</sup>, 훈련장 35,959m<sup>2</sup>)
  - 도시계획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 \* '16.11. 도봉동 소재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21화생방부대 남양주 이전

#### 라. 야구장 건립 비용과 추진 주체

-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은 법령상 자치구 소관사무로,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바,
- 도봉구는 해당 부지가 국방부 소유 부지로 막대한 부지매입비, 도시계획 변경 필요 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유소년 야구장 조성은 어렵다는 의견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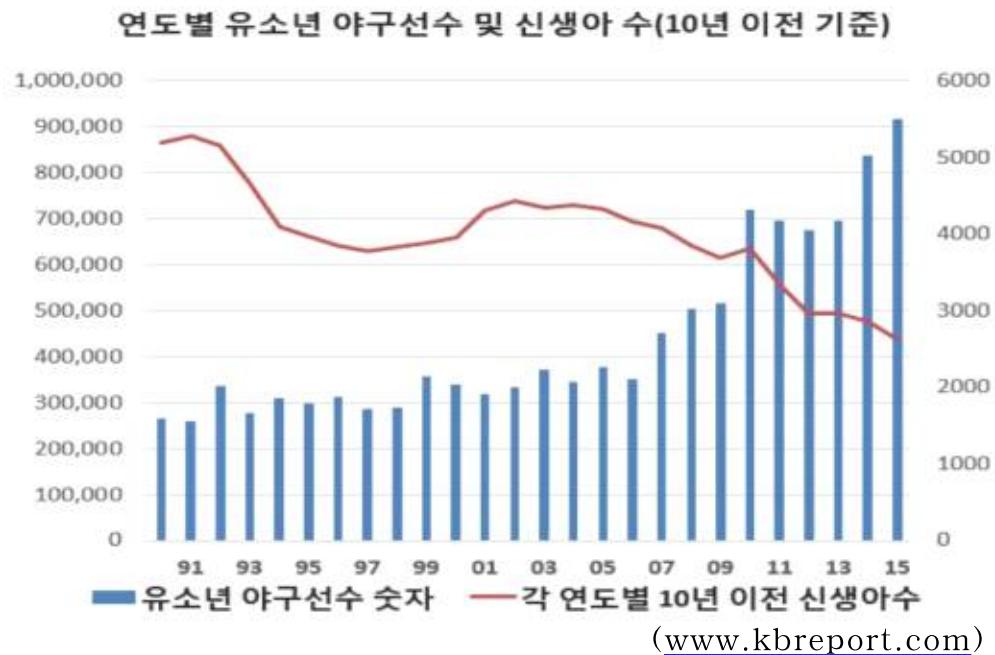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도봉구 유소년야구 발전을 위해 도봉구에서 부지확보 후 유소년야구장 조성 추진시 시비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임.

## 마. 종합의견

- 출생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야구선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그러나 미국에서는 2008~2012년 사이 유소년 인구가 0.6% 감소한 반면 유소년 농구, 축구, 야구, 풋볼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4% 감소했고, 특히 야구 참여자는 20% 감소했고<sup>4)</sup>,
- 일본에서는 2016년 유소년 인구가 2007년 대비 4% 감소했는데, 유소년 야구는 26% 감소했으며,<sup>5)</sup> 초중고생 선수의 숫자도 2007년 66만명에서 2017년 48명으로 감소했음.<sup>6)</sup>
- 우리나라에서도 14살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2016년 677만명에서 2017년 663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 기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생활야구 참여 가능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임.<sup>7)</sup>

4) “야구장에서 어린이가 사라진다”. (미주중앙일보 2015.8.11.)

5) “야구의 위기, 메이저리그의 위기”(인사이트MLB, 2019.8.29.)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소년 축구는 오히려 6% 증가

6) “일본야구의 위기와 오타니”(인사이트MLB, 2019.5.15.)

7) “생활야구 미래인 아이들에게도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www.gameone.kr, 2018.12.31.)

- 비록 각국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소년야구인구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유소년야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소년야구 발전을 위해 저변확대, 클럽제도 활성화와 함께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것이 결국 한국 야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음.<sup>8)</sup>
-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유소년야구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 유소년 팀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건전한 성장<sup>9)</sup>,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유소년야구의 교육적 가치<sup>10)</sup>, 클럽팀 취지에 맞는 어린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소년야구장 확충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유소년야구장 부족은 비단 도봉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소년전용야구장이 6개 뿐인 서울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도봉구의 경우 인접한 노원구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비록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자치구의 사무이고 서울시는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함이 원칙이지만, 부지확보는 물론 각 추진단계에서 시와 자치구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상호협조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8) 박정근, 한국유소년 야구 및 축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9).

9) “야구장에서 어린이가 사라진다”(미주중앙일보 2015.8.11.)

10) “알고 보면 더 재밌다, 리틀야구 이색규정(эм스플 리틀야구, 2018.8.20.)

- 다만 청원인들이 언급한 화학부대 부지에 유소년야구장을 건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 서울시, 도봉구,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첨1〉 서울지역 초등학교 야구단 현황

번호	팀명	팀성별	소속구분	등록선수
1	가동초	남	학교	29
2	갈산초	남	학교	25
3	강남초	남	학교	21
4	고명초	남	학교	27
5	길동초	남	학교	22
6	남정초	남	학교	18
7	도곡초	남	학교	30
8	도신초	남	학교	16
9	방배초	혼성	학교	23
10	백운초	남	학교	20
11	봉천초	남	학교	16
12	사당초	남	학교	13
13	상일초	혼성	학교	25
14	수유초	남	학교	21
15	역삼초	남	학교	23
16	영일초	남	학교	24
17	이수초	남	학교	26
18	인현초	남	학교	19
19	중대초	남	학교	32
20	청구초	남	학교	18
21	학동초	혼성	학교	33
22	화곡초	남	학교	27
23	효제초	남	학교	23

##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 서울지역 야구단 현황

번호	팀명	팀성별	소속구분	등록선수
1	강남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21
2	강동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20
3	강북구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16
4	강서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20
5	광진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15
6	구로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17
7	노원구B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14
8	노원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19
9	동작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26
10	마포구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25
11	서대문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24
12	서초구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17
13	성동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13
14	성북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14
15	송파구B리틀야구단	남	클럽	22
16	송파구리틀야구단	남	클럽	17
17	양천구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14
18	용산구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23
19	종로구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5
20	중랑구리틀야구단	혼성	클럽	17

##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소속 서울지역 야구단 현황

번호	팀명	인원수	소속구분	비고
1	강남구유소년야구단	55	클럽	
2	강북구유소년야구단	50	클럽	
3	강서구유소년야구단	60	클럽	
4	경희피닉스유소년야구단	45	클럽	동대문구
5	노원구유소년야구단	75	클럽	
6	도곡유소년야구단	120	클럽	
7	도봉구유소년야구단	80	클럽	
8	동대문구유소년야구단	50	클럽	
9	목동유소년야구단	60	클럽	
10	목동뉴에라유소년야구단	80	클럽	
11	방배유소년야구단	60	클럽	
12	비바유소년야구단	70	클럽	강남구
13	서초구유소년야구단	125	클럽	
14	서초엘론유소년야구단	60	클럽	
15	성동구유소년야구단	100	클럽	
16	성북구유소년야구단	70	클럽	
17	송파구유소년야구단	60	클럽	
18	송파구덕아웃유소년야구단	50	클럽	
19	압구정유소년야구단	60	클럽	
20	양천구유소년야구단	60	클럽	
21	연세유소년야구단	65	클럽	서대문구
22	영등포구유소년야구단	70	클럽	
23	용산구유소년야구단	55	클럽	
24	은평구EG유소년야구단	50	클럽	
25	은평구EBM유소년야구단	65	클럽	
26	은평구VIP유소년야구단	55	클럽	
27	위례유소년야구단	75	클럽	
28	종암중앙유소년야구단	55	클럽	성북구
29	중랑구유소년야구단	60	클럽	
30	중랑이글스유소년야구단	80	클럽	

〈별첨2〉

서울시 야구장 현황

시군구	시설명	소유기관	관리주체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기장				관람석		준공연도	건설사업비	비고		
							바닥재료		중앙길이	1,3루길이	면적	좌석수	수용인원				
							내야	외야									
소계	16개소			259,495	67,892	180,609											
중구	장충리틀야구장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리틀야구연맹위탁)	6,004	1,490	1,532	인조잔디	인조잔디	65	62	3,728	623	2,500	1972			
성동구	살곶이야구장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7,002	7,002	7,002	토사	토사	87		7,002			2015			
광진구	구의야구공원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9,036	334	465	인조잔디	인조잔디	120	96	17,330	700	1,000	2008	9,300		
종량구	신내차량기지야구장	서울 교통공사	종량구시설관리공단	5,194		5,194	인조잔디	토사	84	71	5,194			2017	878		
노원구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야구장	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	5,400	5,400	5,400	인조잔디	인조잔디	76	71	5,400	150		2009	1,500		
노원구	육사야구장	국방부	노원구서비스공단	9,800	0	9,800	인조잔디	인조잔디	102	85	9,800	90		2016	1,650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 야구장(임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1,680			토사	토사			800			2001			
마포구	난지야구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71,890	40		천연잔디	천연잔디	122	98	20,490			2008	1,700		
양천구	목동야구장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559	19,114	인조잔디	인조잔디	120	98	12,674	10,600	16,000	1989	7,900		
양천구	신월야구공원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8,947	206	289	인조잔디	인조잔디	120	96	19,300	300	1,000	2008	500		
양천구	안양천야구장	양천구	양천구	30,000			토사	토사	120	96	26,240			1994~5			
송파구	잠실야구장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탁(LG,두산)		20,741	45,312	천연잔디	천연잔디	125	100	13,918	25,500	31,000	1982	12,600		
송파구	송파유소년야구장	송파구	송파구	4,450		3,025	인조잔디	인조잔디	70	68	3,025	100	200	2009	530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야구장	서울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58,992	29,120	83,476	인조잔디	인조잔디	122	99	12,447	18,076	18,076	2015	194,800		
강동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야구장(임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5,250			토사	토사	40	40	5,250			2008			
강동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야구장(임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5,850			토사	토사	70	58	5,850			2009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20. 1. 2.] [서울특별시규칙 제33호, 2020. 1. 2., 일부개정]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